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59	김태호의원 등 10인	2025. 3. 18.	2025. 9. 16.
	2210865	박충권의원 등 11인	2025. 6. 16.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28.)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그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 3제7항 신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

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